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지원사업-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신규 선정공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선도를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유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생명식품산업 분야 기술기반의 혁신형 유망기업을 선발하여,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통해 전북을 대표하는 농생명식품분야 유망 스타기업으로 육성

2

대상기업 선정방향

-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 지속성장 등 경쟁력을 갖춘 기업
- 경영역량, 사업성, 지역산업 파급효과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 지역 농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
- 도내 원물 및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식품관련 유통 및 ICT기업

3

선정규모 및 지정기간

○ 선정규모 : 총 17개사

※ 창업 8개사(식품제조 6개사, 유통 및 ICT 2개사), 성장 7개사, 리딩 2개사

* 창업분야 유통 및 ICT기업 미선정 시 식품제조 기업으로 대체

○ 지정기간 : 창업 및 성장 2년, 리딩 3년

※ 각 성장단계 지정기간 종료 후, 상위단계 매출요건 충족 시 최대 7년 가능

4

신청 기준

- 식품제조기업

구 분	창업STAR	성장STAR	리딩STAR
대상분야	농생명 식품산업 분야 제조기업 ① 접수 마감일 현재, 전북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기업(도내기업) ② 협약일까지 전북에 본사 또는 사업장 이전 가능 기업(도외기업)		
매출기준 (전년기준)	1억~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고용기준 (공고일기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업력	창업 7년 이내	3년 이상	3년 이상
우대사항	- 정부, 지자체 포상기업 / 유망중소기업, 도지사인증상품지정 등 우수 중소기업 - '25년 직간접 수출기업(총매출 5%이상) / 외부자금 투자유치기업(최근 3년 이내) - 주요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도내인 경우 (*우대사항 가산점 항목 참조)		
지원제한	-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행 중인 기업 * 식품기업 창업 프로그램(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선정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돈움, 도약, 선도, 스타, 강소) 졸업 기업은 신청가능		

- 도내 원물 및 가공식품 유통기업 및 식품관련 ICT 기업

구 분	유통기업	식품관련 ICT 기업
대상분야	도내 원물 및 가공식품 유통기업 (접수 마감일 현재, 전북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기업)	식품 관련 ICT 활용 기업 (접수 마감일 현재, 전북에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기업)
매출기준 (전년기준)	1억 이상 ~	1억 이상~
고용기준 (공고일기준)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자격요건	총 매출액의 50%이상이 도내 원물 및 가공식품인 유통기업	-
업력	창업 3년 이상	창업 3년 이상
지원제한	- (유통) 도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과 연관 없는 유통기업 - (ICT) 식품과 연관성이 없는 ICT기업	

구 분	유형	지원 내용	비고
창업 STAR	기술지원 (역량강화)	• 창업 애로기술 해결 및 경쟁력강화 지원 - 아이디어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 - 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 생산 공정개선 •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재산권, 인증 획득 지원	기업지원금 최대 30백만원 (자부담: 총사업비의 20%이상)
	사업화 마케팅지원	• 신제품 시장검증 및 마케팅 지원 -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콘텐츠제작, 홍보 등	
성장 STAR	기술지원 (Level-UP)	• 신기술개발 및 성장아이템 구현 시제품 제작 • 기술력 강화 애로기술 해결 지원 - 국내외 인증, 특허, 공정개선 등	기업지원금 최대 40백만원 (자부담: 총사업비의 20%이상)
	사업화 마케팅지원	• 신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 바이어발굴, 상품기획, 카달로그제작 등 • 기업인지도 제고 브랜드 역량강화 - 홈페이지, SNS, 홈쇼핑, 온라인마케팅 등	
리딩 STAR	기술지원 (기술고도화)	• 종합 기술애로 해결 및 신속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고객클레임 제품 생산공정 개선, 국내외 인증 등	기업지원금 최대 58백만원 (자부담: 총사업비의 20%이상)
	사업화 마케팅지원	• 수요맞춤형 사업화 마케팅 지원 - 국내) 대형유통채널 홍보, 마케팅 활동지원 - 해외) 전시회참가, 바이어초청, 수출인증 등	
창업 STAR	사업화 마케팅지원 (유통)	• 수요맞춤형 사업화 마케팅 지원 - 대형유통채널 홍보, 온라인마케팅 등	기업지원금 최대 30백만원 (자부담: 총사업비의 20%이상)
	기술지원 (ICT)	• 신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재산권, 인증 획득 지원 - 시제품 제작	
공통 운영 지원	성장전략 수립	○ 기업진단 및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지원 - 전문가 컨설팅(기업별 1회 진행)	17건
	공동마케팅	○ 국내 박람회 공동관 운영(10개사 내외) - 대표기업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1회
	협력 네트워크 운영	○ 기업 간 교류 및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 찾아가는 기업탐방, 성과보고회, 간담회 등	5건

* 지정기업은 성장전략 수립 지원을 의무적 이행

①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6년 1월 26일(월) ~ 2월 27일(금)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6년 2월 9일(월) ~ 2월 27일(금) 18:00까지

②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지원신청서 첨부 서류 제출)
 - ※ 접수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해 인정, 이후 접수 불가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관 기업육성팀
 - ※ 문의 : 063-210-6573(기업육성팀 조용석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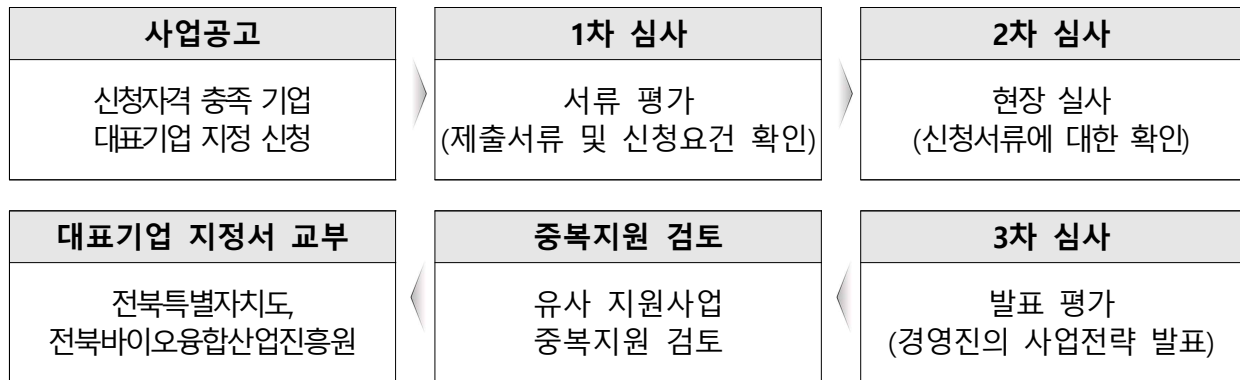
③ 신청서류

- 신청서(양식)교부 : 사업신청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주관기관(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jif.re.kr))에서 다운로드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각 1부

구분	신청 서류	부수	비고
필수 제출 서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지정 신청서(직인 날인 필수)	1부	
	참여 협약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신청기업 자가진단체크 리스트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장 소재지 확인서류(공장등록증 등)	1부	
	재무제표('23년~'25년),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25년)	각 1부	연도별 제출
	종업원 수 증빙자료('23년~'25년) -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검색기준 해당연도 12.31일)	각 1부	연도별 제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지역내 원료매입 증빙(세금계산서 등)	1부	'25년 기준
해당 시 제출 서류	혁신인증, 품질인증, 지식재산권	각 1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각 1부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각 1부	
	연구개발부서 운영 실적(비용처리 등)	1부	
가산점 증빙	포상 및 표창 현황('23년~'25년 수상실적) - 정부 및 지자체 포상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각 1부	
	기업인증 현황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 도지사 인증상품 지정기업 등	각 1부	
	수출실적(총매출액 1% 이상) 보유기업('25년 실적)	1부	
	외부자금 투자유치기업(최근 3년 이내 투자유치 실적)	1부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에 대한 운영기관의 검토 및 보완
- 2차 현장실사 : 신청기업 현장 방문(신청서 작성내용 사실여부 확인)
- 3차 발표평가 : 자유형식(PPT, PDF 등)으로 작성된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기업대표가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심사단계별 평가방법

구분		주요내용		
1차 서류심사	배점	100점(40%)	심사장소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심사방법	서류 평가	심사위원	도내 외 전문가 7인 이내 구성
	심사내용	제출한 제반서류 확인, 신청요건 확인, 가산점 등을 심의		
	선정규모	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고득점순(2배수)		
2차 현장실사	배점	없음(3차 발표평가 시 현장실사 내용 반영)	심사위원	사업 담당자
	실사방법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생산시설, 경영상태 확인		
3차 발표심사	배점	100점(60%)	심사장소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심사방법	발표평가	심사위원	도내외 전문가 7인 이내 구성
	심사대상	1차 평가 고득점순(2배수) 기업	심사시간	총 20분 내외
	심사내용	- 신청기업 대표, 경영진의 사업전략 발표 및 경영역량 확인 - 신청서류 기준 질의응답		

○ 심사 단계별 평가항목

①-1 (1단계) 서류 평가 (정량) - 창업스타 평가기준

분 야		평가항목	배점
기업 역량	경영역량	대표자 동종업계 경력, 신청기업의 업력	10
		대표자 지분 20% 이상 보유	5
		세금 체납/연체 사실없음, 외부회계감사 시행	5
	마케팅역량	마케팅(영업)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포함) ※ 1인 사업자의 경우 마케팅 전담인력은 미보유	5
혁신 역량	혁신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인증 (유효기간 이내)	5
	품질인증	최근 3년간 품질인증 유무 (GMP, HACCP, 할랄, FDA등)	5
	지식재산권	최근 3년간 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등	5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 내 원료매입 비중	15
경영 성과		직전년도 매출액	15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 3년미만 기업은 산출가능(상하반기)한 해당기간으로 산정	20
		최근 3년간 고용증가율 ※ 3년미만 기업은 산출가능(상하반기)한 해당기간으로 산정	10
합 계			100

①-2 (1단계) 서류 평가 (정량) - 성장스타

분 야		평가항목	배점
기업 역량	경영역량	대표자 동종업계 경력, 신청기업의 업력	10
		대표자 지분 20% 이상 보유	5
		세금 체납/연체 사실없음, 외부회계감사 시행	5
	연구역량	연구개발 부서 보유(연구개발 전담인력 보유 포함)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5
혁신 역량	혁신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인증 (유효기간 이내)	5
	품질인증	최근 3년간 품질인증 유무 (GMP, HACCP, 할랄, FDA등)	5
	지식재산권	최근 3년간 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등	5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내 원료매입 비중	15
경영 성과		직전년도 매출액	15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최근 3년간 고용증가율	10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합 계			100

①-3 (1단계) 서류 평가 (정량) - 리딩스타

분 야		평가항목	배점
기업 역량	경영역량	대표자 동종업계 경력, 신청기업의 업력	10
		대표자 지분 20% 이상 보유	5
		세금 체납/연체 사실없음, 외부회계감사 시행	5
	연구역량	연구개발 부서 보유(연구개발 전담인력 보유 포함)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5
혁신 역량	혁신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인증 (유효기간 이내)	5
	품질인증	최근 3년간 품질인증 유무 (GMP, HACCP, 할랄, FDA등)	5
	지식재산권	최근 3년간 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등	5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내 원료매입 비중	15
경영 성과		직전년도 매출액	15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최근 3년간 고용증가율	10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합 계			100

<가산점> *최대한도 5점

구 분	배점	지 표 설 명	점수								
◦ 포상 및 표창 현황(2023년-2025년) - 정부 및 지자체 포상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3	<table><tr><td>건 수</td><td>3건 이상</td><td>2건</td><td>1건</td></tr><tr><td>점 수</td><td>3점</td><td>2점</td><td>1점</td></tr></table> ◦ 1점 / 1건 ※ 공고일 기준, 인증기간 내, 각 항목당 1점	건 수	3건 이상	2건	1건	점 수	3점	2점	1점	
건 수		3건 이상	2건	1건							
점 수		3점	2점	1점							
◦ 기업인증 현황(인증기간 내) -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 수출 유망중소기업 - 도지사 인증상품 지정기업 등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인증기간 내)											
◦ 수출실적 보유기업 ('25년 수출실적) - 직접수출/간접수출 증빙 확인 시 - 총매출액의 1%이상 수출증빙	2	<table><tr><td>구분</td><td>실적보유</td><td>실적 미보유</td></tr><tr><td>가점</td><td>2점</td><td>0점</td></tr></table>	구분	실적보유	실적 미보유	가점	2점	0점			
구분	실적보유	실적 미보유									
가점	2점	0점									
◦ 외부자금 투자유치기업(최근 3년이내)	2	<table><tr><td>구분</td><td>실적보유</td><td>실적 미보유</td></tr><tr><td>가점</td><td>2점</td><td>0점</td></tr></table>	구분	실적보유	실적 미보유	가점	2점	0점			
구분	실적보유	실적 미보유									
가점	2점	0점									
◦ 주요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도내인 경우	2	<table><tr><td>구분</td><td>실적보유</td><td>실적 미보유</td></tr><tr><td>가점</td><td>2점</td><td>0점</td></tr></table>	구분	실적보유	실적 미보유	가점	2점	0점			
구분	실적보유	실적 미보유									
가점	2점	0점									
가 산 점 소 계 [※ 최대한도 5점]		_____ 점									

②-1 유통기업 (1단계) 서류 평가 (정량) - 평가기준

분 야		평가항목	배점
기업 역량	경영역량	대표자 동종업계 경력, 신청기업의 업력	10
		대표자 지분 20% 이상 보유	5
		세금 체납/연체 사실없음, 외부회계감사 시행	5
	마케팅 역량	마케팅(영업)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포함) ※ 1인 사업자의 경우 마케팅 전담인력은 미보유	5
기업 경쟁력	판매처	오프라인 매장 보유, 온라인 쇼핑몰 보유	10
	거래처	거래 기업 수, 기업 제품 수	20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 내 원료매입 및 가공식품 판매비중	30
경영 성과		직전년도 매출액	15
합 계			100

②-2 식품관련 ICT 기업 (1단계) 서류 평가 (정량) - 평가기준

분 야		평가항목	배점
기업 역량	경영역량	대표자 동종업계 경력, 신청기업의 업력	10
		대표자 지분 20% 이상 보유	5
		세금 체납/연체 사실없음, 외부회계감사 시행	5
	개발능력	기술개발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포함) ※ 1인 사업자의 경우 기술개발 전담인력은 미보유	10
기업 경쟁력	기술능력	보유 프로그램 및 상용화 프로그램	10
	지식재산권	최근 3년간 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등	20
사업연관성		식품관련 ICT 기업	30
경영 성과		직전년도 매출액	10
합 계			100

③ (2단계) 현장 실태조사

-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기업환경, 경영상태, 연구 및 생산능력 등

분 야	평가항목	현장확인
인프라 역량	신청서류 기재된 연구장비 및 생산시설 보유, 운영 현황	5단계 척도평가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기업환경	신청기업 본사 및 공장 등 영업장 기업환경 수준	
기업대표자의 사업 참여의지	현장 실태조사 대응 및 대표기업 지정, 육성사업에 대한 관심도	

④ (3단계) 발표 평가 (정성) - 공통

분 야	평가항목	배점
기업경영 환경	기업 경영방침 및 경영계획의 적정성	20
대표자 리더십	대표자의 경영 혁신 의지	10
미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성장 목표의 도전성	10
	미래 추진사업 방향의 적정성	10
	판로확대 전략의 타당성	10
	보유기술, 제품의 시장경쟁력 및 독창성	20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 일자리창출 및 관련산업 파급효과	10
사업 참여의지	대표자의 사업참여 의지, 활용계획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중복지원 검토

- 유관기관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또는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내용 종합 검토

※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경통원, 전북테크노파크)

※ 식품기업 창업 프로그램 등(바이오진흥원)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및 거짓인 경우
-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항목(규격)에 대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출연금 등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제재부가금

-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하는 지원금)의 3배
-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